

식약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에토미데이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선제적, 적극적 관리
- UN 통제물질 지정 대상 및 오남용 우려 물질 마약류 신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엔(UN)에서 통제물질로 지정 예정인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마약 4종, 향정신성의약품 1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 수행

** (마약)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4종, (향정) 헥사히드로칸나비놀

*** (향정)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유엔(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기존 마약류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성되는 신종 마약류로, 식약처에서는 국제 마약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물질이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되었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지정이 국제사회 마약류 규제와 조화하는 동시에 국내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물의약품안전처 · 대한민국마약퇴치운동본부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통스럽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1342
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현철 (043-719-2898)
		담당자	사무관	박미영 (043-719-2891)
	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약리마약연구과	책임자	과 장	정기경 (043-719-5201)
		담당자	연구관	박수정 (043-719-5203)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10년 지겨운 국민안전, 100년 불여달 안심기준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구분	관련 규정	물질명
마약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2호마목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N-Pyrrolidino protonitazene)
		엔-피롤리디노 메토니타젠 (N-Pyrrolidino metonitazene)
		에토니타제피프네 (Etonitazepipne)
		엔-데스에틸 이소토니타젠 (N-Desethyl isotonitazene)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	헥사히드로칸나비놀 (Hexahydrocannabinol) *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4호나목 해당 제외
	「마약류관리법」 제2조제3호라목	에토미데이트 (Etomidate)
		렘보렉산트 (Lemborexant)